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
----------	-----

제출년월일 : 1997. 8.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사무의 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업무의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른 관계 조문삭제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삭도·궤도사업 업무의 일원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
- 조직개편에 따른 관장부서 정비

근거법령 (따로붙임)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 전기사업법 제44조
- 삭도·궤도법 제7조, 제8조 등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제4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4호”로 하며, 공업과 소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공 업 과	2	○10만V미만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	전기사업법 제44조 제2항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분야별 란의 업무관장부서중“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로 하여, 소관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문화예술과	1	○출판사 및 인쇄소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나. 등록증 교부 및 정정 교부 다. 폐업신고의 수리 라. 등록취소 마. 간행물 납본처리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 에관한법률 제3조 동법 제3조 제2항 동법 제5조제1항 동법 제5조의2 동법 제4조 제1항
	2	○종교의식용 피아노(전자오르겐 포 합)의 면세용도 증명서 발급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16호, 동법시행 령제30조제2항제1의2호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체육 청소년과	3	○ 공연자등록·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리 나.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다. 폐업등 신고수리 라. 등록취소	공연법 제3조 동법 제4조, 제5조 동법 제6조 동법 제6조의2
	1	○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고 체육시설업에 한함)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신고필증 교부 및 재교부 다.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 수리 라. 휴·폐업 신고수리 마.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사. 등록취소등 처분 아. 체육시설 이용료의 조정에 관한 필요조치 자. 자료제출 명령, 검사 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 카. 시설업자의 청문	체육시설업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 제36조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교통행정과 소관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교통행정과	47	○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공사시행의 인가 및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공사기간의 지정 나. 도로의 유지·보수 및 도로 원상회복	삭도·궤도법 제7조 제8조 제1항 동법 제11조, 제12조

분 야 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다. 준공검사	동법 제13조
		라. 시설변경의 인가	동법 제14조
		마. 사업개시 등의 신고	동법 제15조
		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해산 상속신고 수리	동법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사. 사업의 휴지신고 수리	동법 제18조 제1항
		아. 삭도·궤도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	동법 제19조 제1항
		자. 궤도 접속지에서의 설비의 공용 또는 변경명령	동법 제25조 제2항
		차. 개선명령	동법 제28조 제1항
		카. 사고의 보고	동법 제29조
		타. 필요사항의 보고명령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지시	동법 제30조
		파. 임원의 해임명령, 시설 또는 사업 의 관리명령	동법 제32조
		하. 전용삭도등에 대한 준용사항(공 사시행의 인가, 준공검사, 시설 변경의 인가, 사업개시신고수리, 사업의 양도·양수·합병·해산 ·휴지·상속신고수리, 사고의 보고, 보고·검사, 수수료)	동법 제34조

(별표5) 민간위탁사무중 분야별 업무관장부서의 “문화체육과”를 “체육청소년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경제과	1-3	(생 략)		경제과	1-3	(현행과 같음)	
	4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및 조사	노동조합 법제30조		4	(삭 제)	
	5	노동조합의설립 · 변경신고 및 해산의 수리	노 동 조합법 제13조, 제31조		5	(삭 제)	
	6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규약의변경, 보완명령및결의 처분의 시정 명령 나.임시총회소집 다.단체협약신고 수리 및 변경 취소 명령 라.노동쟁의신고 수리 마.직장폐쇄및 신고수리	노 동 조합법 제16조, 제21조 동 법 제26조 제3항 동 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노동쟁의 조정법 제16조 동 법 제17조		6	(삭 제)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바.노동쟁의행위 신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삭제)	
		사.노동조합총회 및대의원대회 개최 결과 보고(2개 시군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제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위 임결과보고(2개 시군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제외)	동법 제33조				
		자.노동조합의 지역적 구속력	노동조합법 제38조				
		차.노동조합총회 소집	동법 시행령 제14조				
	7	(생략)			4	(현행과 같음)	
공업과	1	(생략)		공업과	1	(현행과 같음)	
	2	10만V미만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제출 수리 및 변경명령	전기사업법 제44조 제1항 및제2항		2	----- ----- ----- 전기안전관리규정변경명령	전기사업법 제44조 제2항
	3-10	(생략)			3-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문화체육과	1	○출판사 및 인쇄소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가-마(생략)	(생략)	문화예술과	1	○출판사 및 인쇄소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가-마(생략)	(생략)
	2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고 체육시설업에 한함) 가-카(생략)	(생략)		2	○종교의식용 피아노(전자오르겐 포함)의 면세용도 증명서 발급 특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6호, 동법시행령제30조제2항제1의2호	
	3	○종교의식용 피아노(전자오르겐 포함)의 면세용도 증명서 발급 가-라(생략)	(생략)		3	○공연자등록·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가-라(생략)	(생략)
	4	○공연자등록·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가-라(생략)	(생략)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고 체육시설업에 한함) 가-카(생략)	(생략)
교통행정과	1-46	(생략) (신설)		교통행정과	1-46	(현행과 같음)	
					47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공사시행의 인가 및 인가받은사항의 변경,공사기간의 지정 나.도로의 유지·보수 및 도로원상 회복 삭도·궤도법제7조제8조제1항 동법제11조제12조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신설)				다.준공검사	동법 제13조
						라.시설변경의 인가	동법 제14조
						마.사업개시 등의 신고	동법 제15조
						바.사업의 양도·양수·합병·해산·상속신고 수리	동법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사.사업의 휴지신고 수리	동법 제18조 제1항
						아.삭도·궤도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	동법 제19조 제1항
						자.궤도접속지에서의 설비의 공용 또는 변경명령	동법 제25조 제2항
						차.개선명령	동법 제28조 제1항
						카.사고의 보고	동법 제29조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신설)				다.필요사항의 보고 명령 및 시설에 대한 검사지시 파.임원의 해임명령 시설또는 사업의 관리명령 하.전용식도등에 대한 준용사항(공사 시행의 인가, 준공검사, 시설변경의 인가, 사업개시신고수리, 사업의 양도·양수·합병·해산·휴지·상속신고수리, 사고의보고, 보고·검사, 수수료)	등 법 제30조 등 법 제32조 등 법 제34조

(별표5)

민간위탁사무

현행					개정				
대상실과	일련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및적용법규	대상실과	일련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및적용법규
문화체육과	1	(생략)			체육청소년과	1	(생략)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수 있다.

< 경제과 소관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7.3.13 전문개정, 법률제5310호】

○ 제8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1997.3.27 대통령령제15321호】

○ 제33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 한다.

(이하생략)

< 공업과 소관 >

□ 전기사업법 제44조 (전기안전관리규정)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수 있다.

(이하 생략)

< 교통행정과 소관 >

□ 삭도·궤도법

○ 7조 (공사시행의 인가)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의 면허 받은자(이하 “삭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궤도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이하 “궤도사업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8조 (공사준공)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석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하여야 한다.

○ 11조 (도로의 유지 및 보수)

○ 12조 (도로원상회복)

○ 13조 (준공검사)

○ 14조 (시설변경의 인가)

○ 15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

○ 17조 (사업의 양도·양수·합병·해산등)

○ 17조의2 (상속)

○ 18조 (사업의 휴지)

○ 19조 (관리의 위탁 및 수탁)

○ 25조 (궤도접속지의 시설)

○ 28조 (개선명령)

○ 29조 (사고의 보고)

○ 30조 (보고·검사)

○ 32조 (임원의 해임등)

○ 34조 (전용석도 등에 대한 준용)